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8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 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 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

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 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 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한 품목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 제32284호와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는 폐지한다.

[별표 1]

2022년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수입전량	
2711	11	천연가스		0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별표 2]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3]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04	00	<p>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p> <p>1. 코크스</p> <p>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p>		0	수입 전량	
2709	00	<p>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p> <p>1. 석유</p> <p>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p> <p>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p> <p>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p> <p>라. 섭씨 15도에서 비중</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p> <p>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p>	0.5 2	206,000,000 배럴 39,500,000 배럴	대한석유 협회

	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 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 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 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 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 (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 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 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 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 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 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 일(waste oil)			

	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 (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 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 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 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 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 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 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 트 오일(waste oil)은 제외 한다]			
2710	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 기타	석유화학 원료용	0	수입 전량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2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2	
2803	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 다]			
		1. 아세틸렌 블랙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	69	기타	실리콘메탈(실리콘 제조 및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	90	기타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NCM 전구체)(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9	기타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리튬코발트산화물(이차전지 제조	0	수입 전량

			용으로 한정한다)		
			2. 리튬니켈코발트 망간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 리튬니켈코발트 알루미늄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5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일릴렌다이아민(XDA)[자일릴렌다이소시아네이트(XDI)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폴리머 배합용 원료(TFMB)(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2923	90	기타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제 3203 호·제 3204 호·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 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하 다), 루미노퍼 (luminophore)로 사용되 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 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 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 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수입 전량
3208		페인트와 바니시 (varnish)[에나멜·래커 (lacquer)를 포함하며, 합 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 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 水性) 매질(媒質)에 분산 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 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	90	기타	이오노머분산액(연 료전지 제조용으로	0	수입 전량

			한정한다)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1	수입 전량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백금촉매(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흑연화합물(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전해액(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91,800 톤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이 아닌 것	0	36,000 톤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8,000 톤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
3901	90	기타	폴리에틸렌(휴대폰 용 플라스틱 렌즈제 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6	플루오르 중합체				
3904	69	기타	폴리불화비닐리덴 (PVDF) 바인더(이 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 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 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 으로 한정한다]				
3907	40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용 플라스틱 렌즈 제조용	0	수입 전량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 의 판·시트(sheet)·필름· 박(箔)·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21	90	기타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파우치(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5002	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200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
					톤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 인 것	0		합회
		마. 36.67 데시텍스를 초 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 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않 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하 다]			
5205	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 (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 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 샤(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수입 전량	

5205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32	<p>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p> <p>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p>		0	
5205	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4	수입 전량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3. 기타		0	수입 전량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0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전극기재 제조용 탄소섬유 제품(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006	00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			

		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 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 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	1	플라티늄(platinum)			
7110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 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7110	2	팔라듐(palladium)			
7110	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 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7110	3	로듐(rhodium)			
7110	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 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 힌 금속의 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 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 의 웨이스트(waste)와 스			

		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4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	0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	페로 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를 초과하는 것		1	수입 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1	수입 전량
7202	93	페로 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			

		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 (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 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 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이차전지 제조용	0	7,433톤	한국전지 산업협회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1	수입 전량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 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8104	1	괴(塊)				
8104	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 인 것		1	수입 전량	
8104	19	기타		1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 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5	수입 전량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	9	부분품			
	99	기타	흡착제(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5	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와인더(탄소섬유 권취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	8	그 밖의 기기			
8479	89	기타	와인더(탄소섬유 권취용으로 한정한다)	0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			

		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	80	그 밖의 기계	연신기(전해질막 제조 시 사용되는 다공성 지지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3	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료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 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			

		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 식이나 유전손실 (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	19	기타	소성로(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탄소섬유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1	전극			
8545	11	노(爐)용		1	수입 전량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49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549	2	귀금속의 회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8549	29	기타	폐인쇄회로기판(귀금속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 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 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 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 함한다]			
9018	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 는지에 상관없다)	카트리지형 주사기 (성장호르몬 치료제 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별표 4]

2022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2. 기타		0	수입 전량	

(제3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 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 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8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22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⑤ H S	⑥ 품 명	⑦ 추천서번호	⑧ 당초기간 만 료 일
			⑨ 연장기간 만 료 일
<p>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호 제5조 규정에 따라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연장사유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22. .</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기관의 장) 귀하</p>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분할추천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p>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할당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분할사유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2. .</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기관의 장) 귀하</p>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제6호 서식)

관 세 할 당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도입선	도입 일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22. . .까지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함.

2022. . .

(추천기관의 장)

(인)

